

##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82호(2020. 2. 27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된 구로구 구로동 715-24번지 일대 “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재개발 정비구역”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.

2024년 2월 22일

구로구청장

###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종 류 : 재개발사업(도시정비형)

나. 명 칭 :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재개발 정비사업

###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 치 :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15-24번지 일대

나. 면 적 : 10,832.4m<sup>2</sup>

###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사 업 시 행 자 :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

나. 주된 사무소 :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11길 11-9, 1층(구로동)

다. 대표자 성명 : 남구로재개발통합위원회 대표 심창호

라. 대표자 주소 :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11길 11-9, 1층(구로동)

### 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72개월

### 5. 사업시행계획인가일 : 2024. 2. 16.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: 별 첨

7. 건축물의 대지면적 · 건폐율 · 용적률 · 높이 · 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
| 대지면적      | 건축면적      | 연면적        | 건폐율    | 용적률     | 최고높이  | 층수              | 용도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0,832.4㎡ | 4,522.33㎡ | 49,200.64㎡ | 41.75% | 288.55% | 56.7m | 지하 3층<br>~지상19층 | 공동주택(아파트) 및<br>부대복리시설 등 |

8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

| 공급구분 | 주택의 형태 | 동수 | 세대수 | 주택규모별 세대수(전용면적기준) |    |     |     |    |    |
|------|--------|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|-----|----|----|
|      |        |    |     | 39                | 44 | 59A | 59B | 74 | 84 |
| 소 계  | 아파트    | 3  | 299 | 39                | 44 | 49  | 18  | 99 | 50 |
| 분 양  | 아파트    | 2  | 214 | 1                 | 17 | 35  | 18  | 93 | 50 |
| 임 대  | 아파트    | 1  | 85  | 38                | 27 | 14  | —   | 6  | —  |

9.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(세부내역은 열람장소에 비치)

|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|         |              |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종류          | 규모(㎡)   | 비고           | 종류            | 규모(㎡) | 비고                 |
| 도로          | 2,887.4 | 사업시행자에게 유상양도 | 공공청사          | 878.9 | 시행자 설치 후 구로구에 기부채납 |

10. 다른 법률의 인 · 허가 등 의제처리 사항

가.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

나.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

다. 「하수도법」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

라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

마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

※ 관계서류는 구로구청 도시개발과(☎02-860-2272) 및 사업시행자 사무실(☎02-854-2119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는 구로구청 홈페이지(www.guro.go.kr)에 게재합니다.